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93호 2016. 7. 20(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560-4971, 팩스 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위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서식 제출도 가능합니다.

붙 임 :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끝.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6-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 법” 이라한다)」 시행(1962. 1. 1.)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지형의 형태 등에 의해 시야로부터 상당부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해당시설에는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가족 또는 종중·문중 구성원을 포함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시행 2016.08.3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6-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 법”이라한다)」 시행(1962. 1. 1.)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지형의 형태 등에 의해 시야로부터 상당부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해당시설에는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가족 또는 종중·문중 구성원을 포함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2.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시행 2016.08.3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